


『 영락·추모공원 봉안시설 부부합장 허가 안내 』

- 시행일자 : 2017. 6. 12. 부
- 대상시설 : 봉안당, 벽식봉안담(개인)
- 허가기준 및 방법 : 법적 부부관계인자(사실혼 제외)

부부모두 봉안시설 이용 중	한 분이 봉안시설 이용 중 배우자 사망시	부부합장(예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족대표 선택 1실 합장 (기존시설 중 선택) - 선택 시설 사용허가 조건 준용 (잔여기간 유지, 사용료 미징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족대표 선택 1실 합장 (기존 또는 신규시설 중 선택) - 최근 사망자 사용허가 조건 적용 (신규 사용기간 부여, 사용료 징수)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장(합장) 대상자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- 부부 전용 분리형 봉안함 활용 1기 봉안시설 내 부부합장 - 합장허가 이후 봉안시설 (부부형 벽식봉안담, 가족봉안묘 제외) 이동 불허 		

□ 문 의 : 영락공원 051-790-5016~5017, 5019 / 추모공원 051-790-5170~2

부부합장 신청 절차 : 기존시설 개장신청 → 부부합장 신청

개장신청(서류안내)

부부모두 봉안시설 이용 중

한 분이 봉안시설 이용 중 배우자 사망시

- 한·두개의 봉안시설 당초 신청자가 동일할 경우

- 당초 신청자 본인 내방시 : 신분증, 허가증 분실신고서(현장비치), 개장신고서(현장비치), 통장사본
- 당초 신청자 본인 부재시 :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, 기타 상동
- 당초 신청자 본인 사망시 : 제적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 후순위 연고자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(가족관계나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문의 후 준비요망)

- 한·두 개의 봉안시설 당초 신청자가 다를 경우

- 당초 신청자 별로 각각 상기 절차·서류 등 준용하여 처리

합장신청(서류안내)

○ **개장신고필증, 화장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), 신청자 신분증**

**※ 합장신청 및 허가 완료시 이후 모든 권리·의무는 우선적으로 합장 신청자에게 있으므로
가급적 자제분 중 연장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부부합장용 유골함 구매·각인신청 (영락공원 편의점)

부부합장용 위패신청 (영락원 → 영락공원 편의점, 추모공원 → 추모공원 편의점)